

도시관리계획(명동지구단위계획: 공동개발) 변경 (경미한 사항)결정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51호(2005.11.17)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405호(2014.11.27)로 변경결정 고시된 우리구 『명동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및 제6항 동법을 시행령 제25조 제4항 및 제5항, 동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중구청(도심재생과), 서울특별시(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6월 일
중 구 청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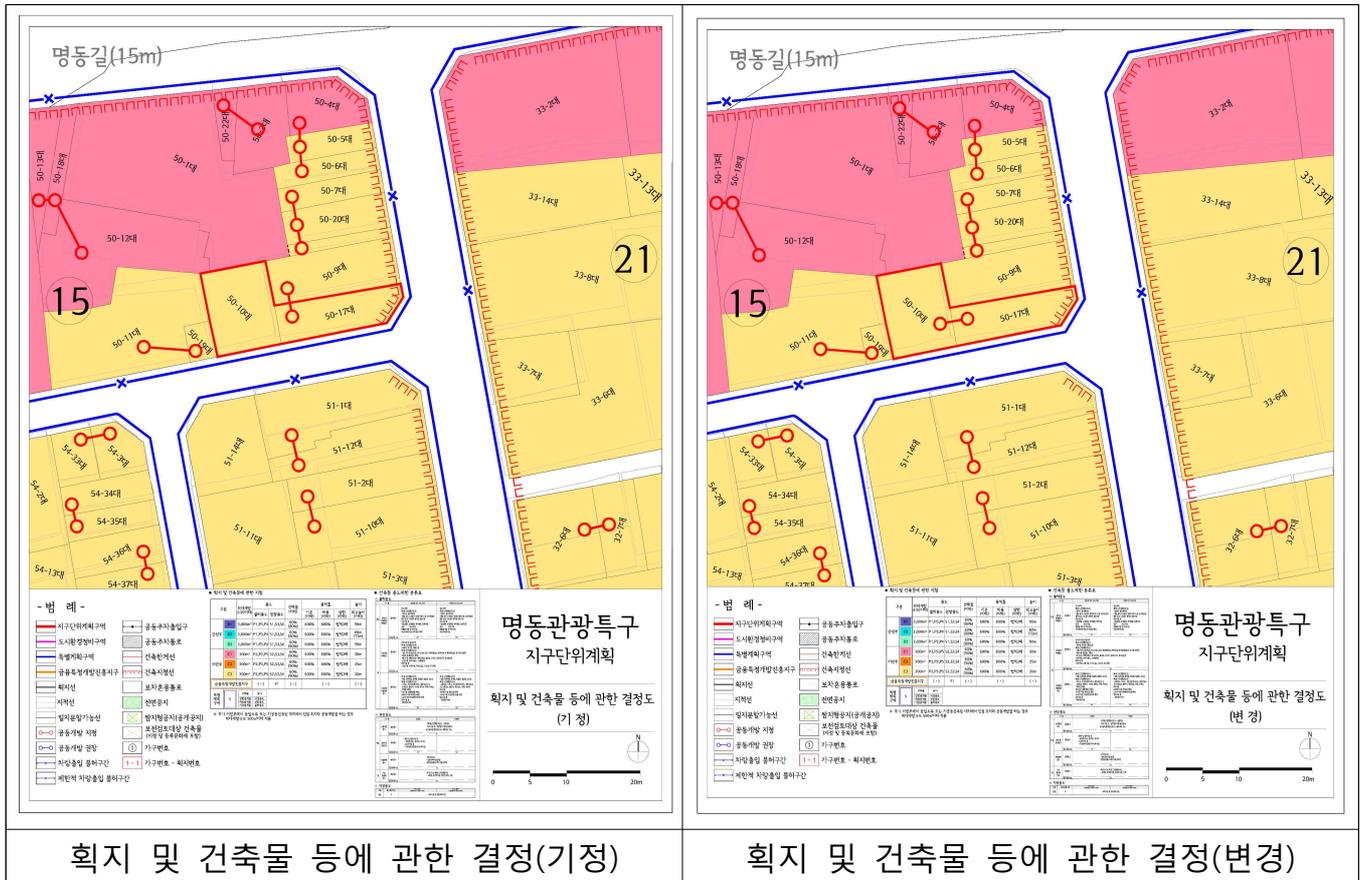
1. 결정 취지
 - 중구 명동2가 50-9,50-17공동개발 지정을 해제하고 명동2가 50-17,50-10 공동개발 지정 - 획지의 규모와 조성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사항임
2. 명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 사항)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치		면적		획지(공동개발) 계획	비 고	기공동 건축	동일 소유
			동명	지번	필지	공동개발				
기 정	이 면 부 15	-	명동2가	50-9	108.4	191.0	공동개발지정	세장형		
			명동2가	50-17	82.6					
			명동2가	50-10	101.2	-	-			
변 경	이 면 부 15	-	명동2가	50-9	108.4	183.8	공동개발지정	세장형		○
			명동2가	50-17	82.6					
			명동2가	50-10	101.2	-	-		○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명동2가 50-9,10,17호	공동개발 해제 및 공동개발 지정	• 소유자가 상이하게 명동2가 50-9, 50-17 공동개발인 것을 해제하고 동일한 소유자간 명동2가 50-10,50-17호 공동개발 지정하여 원활한 개발이 가능토록 변경

3. 관계도면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82,578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